

가입비등 예치신청서

※ 어두운 난()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, 아래의 주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즉시
신청인	성명		
	주소(사무소)	전화번호	
모집주체	조합명		
	대표자		
	조합 주소(사무소)	전화번호	
예치 가입비등	₩ (금 원 정)		
신청인의 계좌			
모집주체의 계좌			

「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」 제5조의5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5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가입비등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예치기관의 장
(지점장) 귀하

예치기관 주의사항
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줘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가입비등을 예치한 사실을 모집주체에게 통지해야 합니다.
- 예치기관의 장은 가입비등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가입비등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.